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27호 2015년 3월 18일(수)

## 공 고

-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-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 입법예고..... 15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##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18일

# 속 초 시 장

### 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

### 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『국민건강증진법』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, 단독직무 수행 절차,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1)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

#### 나. 직무수행범위(안 제6조)

- 1)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

#### 다. 수당지급(안 제7조)

- 1)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

### 4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 5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5년 4월 7일까지**  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217-060/ 속초시 수복로 36(교동 980)

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

(전화: 033-639-2087, FAX: 033-636-0188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## 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(033-639-2087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에 따른 속초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속초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할구역에 적용한다.

제3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) ①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 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속초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연지도원증(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
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1매
3.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) 1부

제4조(금연지도원의 임기)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)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(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,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·폐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)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.

제7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(5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### 금연지도원 신청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신청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(서명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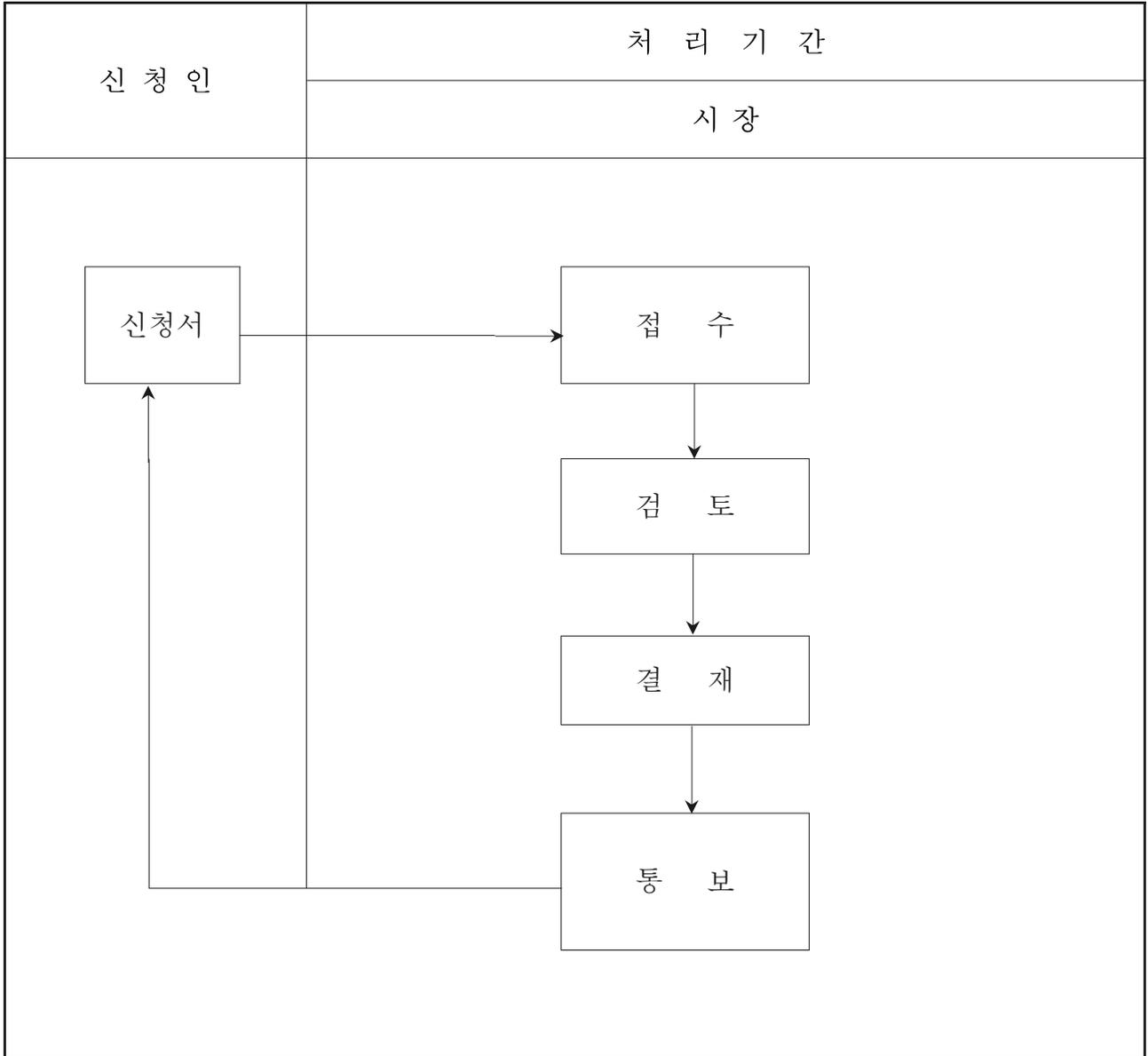
속 초 시 장 귀하

첨부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(3 × 4센티미터) 사진 2매</li> <li>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,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</li> <li>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(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)</li> </ol>
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## 금연지도원 추천서

신청인	성명 (한자)		사진 (3cm×4cm)
	생년월일		
	주소(전화번호)		

자격요건 및 추천사유(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)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,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장: (서명 또는 인)

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: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,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속 초 시 장 귀 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

제 20 - 호

**위 축 장  
금 연 지 도 원**

소 속:  
성 명:  
생 년 월 일:  
위 축 기 간:

(한 자)

위 사람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에 따라 **금연지도원**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속 초 시 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앞 쪽)

제 호

**금연지도원증**

사 진  
3cm×4cm  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
뒤 그림 없이 6개월  
이내에 촬영한 것)

성 명  
속 초 시 장

60mm×90mm

(색상 : 연파랑)

(뒤 쪽)

소 속:  
성 명:  
생년월일(성별): ( )

위 사람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 
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  
니다.

년 월 일

속 초 시 장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 
양도할 수 없습니다.  
2. 법에서 정하는 감사·계도 등의 업무를  
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  
다.  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
넣어 주십시오.

☎ 전화번호 : 000-000-0000

주) 지질은 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 or 플라스틱



##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

금연 지도원	① 소속(단체명)		② 성 명		
	③ 생년월일		④ 전화번호		
	⑤ 주 소				
⑥ 출입 기간		년 월 일 부터	년 월 일 까지		
⑦ 출입 장소					
⑧ 직무수행범위					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「금연지도원 운영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속 초 시 장    직인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 입법예고

「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3월 18일

# 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규칙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- 『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』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(안 제2조)

- 1)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

나. 경계의 표시 방법(안 제3조)

- 1)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가.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5년 4월 8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217-060/ 속초시 수복로 36(교동 980)

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

(전화: 033-639-2087, FAX: 033-636-0188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(033-639-2087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속초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) 「속초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)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.

1.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
2. 도면
3.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

### 부칙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

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기준

1. 표지판 및 안내판 (예시)

가. 공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

 <p><b>금연구역</b> No smoking Area</p> <p>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[금연구역 : 공원 전 구역]</p> <p>속초시</p>	1) 규격	90cm×60cm×180cm(주지형 및 부착형)
	2) 재질	메타세콰이어 자연속성목, 오일스테인도장
	3) 글씨체	국문(윤고딕340, 윤고딕350), 영문(윤고딕350)
	4) 색상	바탕색 - 흰색(깨끗함) 테두리 - 녹색(생명) 금연로고 - 검정색, 적색(DIC 198)
	5) 내용	가) 상단 : 금연공원, 나) 중앙 : 금연로고 다) 하단 :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/속초시 마크

나.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 표지판 및 안내판

 <p><b>금연구역</b> No smoking Area</p> <p>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[금연구역 : 어린이놀이터 전 구역]</p> <p>속초시</p>	1) 규격	60cm×40cm×180cm(주지형 및 부착형)
	2) 재질	PVC 5mm, UV코팅, 실사출력부착
	3) 글씨체	국문타이틀(윤고딕340) 본문(윤고딕340, 350) 영문(윤고딕350)
	4) 색상	바탕(흰색), 테두리(C90, M60, Y100) 금연구역(M100), 글자(검정 K100, 적색 DIC2483)
	5) 내용	가) 상단 : 금연구역 나) 중앙 : 금연로고 다) 하단 :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/속초시 마크

다. 학교정화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

 <p><b>금연구역</b> No smoking Area</p> <p>50m이내 전 구역</p> <p>이 학교정화구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[금연구역 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]</p> <p>속초시</p>	1) 규격	60cm×40cm(부착형)
	2) 재질	포맥스(5T), 유포지(무광코팅)
	3) 글씨체	국문(윤고딕340, 윤고딕350), 영문(윤고딕350)
	4) 색상	바탕색(흰색), 글자(검정색 K100, 적색 M100)
	5) 내용	가) 상단 : 금연구역, 학교주변 금연표시 나) 중앙 : 금연로고 다) 하단 :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/속초시 마크

라.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안내판

	1) 규격	지름 30cm(부착형 및 스티커형)
	2) 재질	PVC 5mm, UV코팅,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
	3) 글씨체	국문타이틀(윤고딕350), 본문(윤고딕340), 영문(윤고딕340)
	4) 색상	바탕(흰색),테두리(M100,Y100),금연구역 (M100,Y100),글자(검정K100,적색 DIC2483)
	5) 내용	가) 상단 : 간접흡연에 관한 문구 나) 중앙 : 금연표시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, 금연구역 조성목적 다) 하단 : 속초시 마크

마. 특화거리 표지판 및 안내판

	1) 규격	60cm×40cm(부착형)
	2) 재질	포맥스(5T),유포지(무광코팅)
	3) 글씨체	국문(윤고딕340, 윤고딕350), 영문(윤고딕350)
	4) 색상	바탕색(흰색), 글색(검정 K100,적색 M100, Y100)
	5) 내용	가) 상 단 : 금연구역 나) 중 앙 : 금연로고 다) 하 단 : 금연구역 경계표시,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/속초시 마크

바.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

	1) 규격	지름 30cm(부착형)
	2) 재질	PVC 5mm, UV코팅,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
	3) 글씨체	국문(윤고딕340) 영문(윤고딕340)
	4) 색상	바탕색 - 녹색(생명) 글씨 및 흡연로고 - 흰색
	5) 내용	상단 : 흡연구역 로고 하단 : 흡연구역